

2017년 제2회 원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개최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2017. 1. 26.(목) 10:00, 집현실
- 참석위원 : 총10명
 - 위원장 : 부원장 (김경혜)
 - 위 원 : 9명(기획조정본부장, 6개 연구실장 및 도시정보센터장,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)
- 심의안건
 - 정원외직원 임용규칙 일부개정(안)

심의결과 : 원안의결

심의안건 및 주요내용

- 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기준 일부개정
 - 인상률 적용 : 2016년 대비 정률 3.5%인상
 - 무기계약직 운영지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[별표2]의 운영직원 부분 삭제
 - 시행일 : 이 규칙은 2017. 1. 1.부터 적용한다.

붙임 : 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기준<별표2> 1부 끝.

[붙임] 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기준<별표2>

2017년 정원외직원 계약금액 산정기준

[단위 : 천원/월]

구분	직급	등급	계약금액	산정기준
초빙연구원	초빙선임 연구위원	가	4,576	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력, 연구실적, 사회적 지위 등을 참고하여 원장이 정함.
		나	4,406	
		다	4,234	
	초빙 연구위원	가	3,916	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력, 연구실적, 사회적 지위 등을 참고하여 원장이 정함.
		나	3,745	
		다	3,574	
	초빙 부연구위원	가	3,540	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	나	3,369	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	다	3,199	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위촉 연구원 · 연구 보조원	위촉 연구원	가	2,719	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	나	2,607	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	다	2,493	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연구 보조원	가	2,174	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·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	나	2,060	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·행정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		다	1,945	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·행정경력 1년 미만인 자 또는 원장이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운영직원	운영직원	(삭제)		